

2022년도 해외홈쇼핑 방송판매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는 「2022년도 해외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홈쇼핑 방송 및 판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 홈쇼핑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2월 14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2년도 해외홈쇼핑 방송판매지원사업

-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하여 홈쇼핑 대기업 해외플랫폼활용 중소기업 제품 해외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및 해외마케팅 활동 촉진

□ 사업내용

- TV홈쇼핑 4개사 해외플랫폼 및 인프라를 활용, 제품수출을 희망하는 방송후보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외홈쇼핑 방송 및 판매를 지원

□ 총 12개국 19개 해외홈쇼핑 방송채널 활용

구 분	진출현황	진출내용
우리홈쇼핑	8개국 10개 채널	대만 (모모홈쇼핑), 일본 (QVC JP, Shop Channel), 인도네시아 (Lejel Shop, O Shop), 말레이시아 (Go Shop), 태국 (TVD), 미국 (MBC AMERICA), 두바이 (Citrus TV), 베트남 (VGS)
GS홈쇼핑	6개국 6개 채널	중국 (HUMAI), 태국(TRUE SHOPPING), 인도네시아(MNC SHOP), 베트남(VGS), 말레이시아 (GO SHOP), 미국 (MBC AMERICA)
현대홈쇼핑	4개국 6개 채널	호주 (TVSN), 대만 (동삼홈쇼핑, 모모홈쇼핑), 인도네시아 (LEJEL, O SHOP), 말레이시아(ASTRO)
공영홈쇼핑	3개국 3개 채널	필리핀(K-onstyle), 태국(Stark), 싱가포르(Responze 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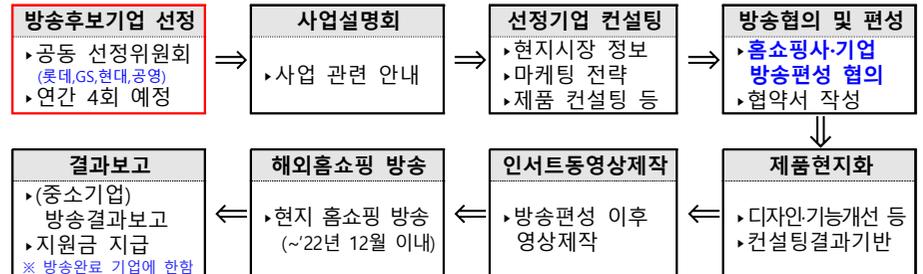
* 홈쇼핑사의 해외 JV 사 및 현지 협력 홈쇼핑사 활용 해외홈쇼핑 방송 지원

[국가별 선호 품목 군]

국가명	플랫폼명	선호 품목
대만	동삼홈쇼핑	1.의류(니트, 블라우스, 셔츠) 2.생활용품(아이디어상품) 3.일반식품 4.주방가전(밥솥, 냄비 등) 5.이미용품(콜라겐, 삼푸 등)
	모모홈쇼핑	
말레이시아	GO SHOP	1.주방용품(프라이팬, 욕, 쿠커 등) 2.이미용품(색조, 스킨케어 등)
	ASTRO	1.주방가전(밥솥, 냄비 등) 2.이미용품(콜라겐, 삼푸 등)
싱가포르	Reponze TV	1.주방용품(멀티쿠커 등) 2.화장품
베트남	VGS SHOP	1.이미용품(톤업크림, 스킨케어 등) 2.주방용품(믹서기 등)
인도네시아	LEJEL	1.주방용품(밥솥, 냄비, 후라이팬, 용기류), 2.생활용품(청소도구) 3.이미용품(콜라겐, 삼푸 등)
	O SHOP	
	MNC SHOP	1.건강용품(건강목걸이, 매트 등) 2.주방용품(후라이팬 등)
일본	QVC	
	SHOP CHANNEL	1.화장품(기초, 색조) 2.건강기능식품
중국	HUMAI	1.주방가전(밥솥, 냄비 등) 2.이미용품(콜라겐, 삼푸 등)
태국	TVD	1.주방용품(후라이팬) 2.화장품(마스크팩)
	TRUE SHOPPING	1.이미용품(톤업크림, 세럼 등)
	StarK	1.화장품(립스틱, 마스크팩 등)
필리핀	K-onstyle	1.생활용품(매직폴딩선반, 변기샐드 등)
호주	TVSN	1.주방가전(밥솥, 냄비 등) 2.이미용품(콜라겐, 삼푸 등)
미국	MBC AMERICA	1.생활건강용품 2.주방용품 3.화장품/미용기구
두바이	Citrus TV	1.화장품/미용기구 2.생활건강용품 3.패션잡화

* 국가별로 선호하는 품목 군이며, 해당 제품 이외의 품목군도 가능성이 있음.

□ 사업 추진절차



2.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특례대상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포함

<지원 제한사항>	
1.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기 지원받은 제품	
2. 당해 연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사업(홈쇼핑 유형)을 통해 2회 이상 지원받은 중소기업	
3. 세금(국세 및 지방세) 체납	
4. 휴·폐업 업체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3. 지원내용

□ 해외홈쇼핑 방송을 위한 동영상 제작비 및 제품 현지화 비용 지원

구분	세부지원내용	정부지원금 한도 (부가세 제외)	비고
동영상 제작	○ 인서트 동영상 제작비 지원 ○ 현지 방송 영상 제작비 지원	실 소요비용의 70% 이내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업체부담 : 실 소요비용의 30% 이상
제품 현지화	○ 해외진출을 위한 제품현지화 (디자인, 기능 및 성능개선 등)		

※ 안내사항

- 사업 참여 중소기업으로 선정 시 매칭된 홈쇼핑사와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해외 홈쇼핑 방송 추진
- 방송준비과정 중 현지사정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방송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방송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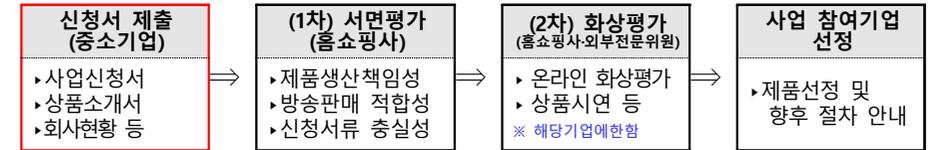
* (결과보고) 첫 방송 이후 30일 이내 참여 중소기업의 결과보고 제출 必

4. 선정절차

□ 선정방법

- 서면평가와 화상 평가를 거쳐 **방송후보기업 최종 선정**

*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온라인 화상평가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별도 안내



□ 신청기간

- '22. 2. 14.(월) ~ 2. 25.(금), 약 2주간

○ 서면평가 결과발표 : 3월 2주차, 신청서에 작성해주신 담당자 이메일로 결과 안내
○ 화상평가 : 3월 3~4주차 중 화상평가 예정

* (참고)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동반진출사업 플랫폼*을 통해 신청·접수

* 동반진출사업 플랫폼 : www.globalwinwin.or.kr

①동반진출사업 홈페이지 접속 → ②회원가입 → ③사업공고 및 과제신청 「해외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1차 모집」 → ④사업신청

○ 필수제출 서류

1. 회사소개서(국문·영문)
2. 제품소개서(국문·영문)
3. 제품이미지

4. 제품 시장성 평가지 [매뉴얼 참고]

- 제품 시장성 평가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평가 페이지 주소 : <https://winwin.smartk2c.or.kr/pre/20220001>

- 평가 진행 및 평가 결과 다운로드 후 첨부

5. 가점관련 증빙서류

가점항목	내용	제출 증빙
R&D 집약기업	재무제표 상 R&D집약도3% 이상인 기업 * 총 매출액 대비 총 R&D투자율	재무제표
R&D 매출성과 우수기업	ROI(정부출연금 대비 관련제품 매출액)이 5배 이상	-
명문장수 기업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선정 및 평가하여 선정된 업력 45년 이상이며, 사회·경제적으로 기여하는 중소·중견기업 <조회방법> 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360	중소기업중앙회 발급 명문장수기업 확인증
일자리 안정 기금 지원기업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 고용불안해소를 위한 지원금	당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지역혁신 성장기업	지역주력산업분야 연관 기업 중 성장성이 우수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우수(스타)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사회적 경제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인증한 4대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조회방법>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con/econEntList.do?m_cd=D047	사회적 경제기업 확인증 혹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내 리스트 캡처 사진

□ 문의처

관 리 기 관 명		연락처
사업 수행기업	나이스평가정보 동반진출 관리지원팀	02-3771-1633
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54, 8732

[붙임1] 해외홍소평 방송·판매 지원사업 서면평가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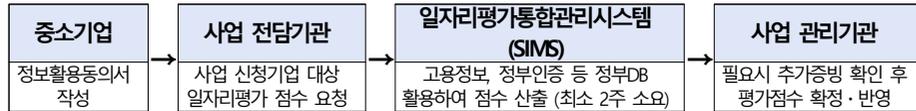
<서면평가항목>

평가 항목	기 준
1. 제품 생산 책임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직접 생산(공장보유) (10점) ○ 제품 OEM 생산 (7점) ○ 제품 판권 보유기업(유통기업) (5점)
2. 해외홍소평 방송판매 적합성 (7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소평 방송 판매경험 유무(10점) (해외홍소평 10점, 국내홍소평 7점, 방송경험 없음 5점) ○ 진출희망국가 인·허가 취득현황(10점)(사업 신청서상 - “진출희망국가” 의 인·허가 취득 혹은 필요 없음(10점) - 진출예정(희망)국가 인·허가 취득 예정(7점) - 인·허가 취득사항 없음(5점) ○ 해당 사업 담당 전담인원 유무(5점) (전담인원 보유 5점, 전담인원 미보유&인력충원계획 등이 있는 경우 3점, 전담인원 미보유&충원계획 등이 없는 경우 2점) * 중·장기 인력충원계획, 신규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교육훈련비, 자기개발비, 기업 내 업무 인력 관련 전문 프로그램 및 전담인력 보유 정도 ○ 제품 시장성 평가(5점) *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기제품의 시장경쟁력 등 분석 ○ 해외홍소평 방송 적합도(40점) * 해외홍소평 현지 MD 의견 반영한 적합도 평가(홍소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00점을 20점으로 산출하여 반영 <일자리양> (70점) ○ 고용증가(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증가율) <성과공유>(20점) ○ 미래성과공유 협약 ○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 우리사주조합 운영 / 스톡옵션 운영 <근로환경>(10점) ○ 정규직 전환 / 일자리 함께하기 ○ 가족친화 인증기업 / 청년친화 강소기업 ○ 노사문화 우수기업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p><붙임2>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개요 및 평가항목 참고</p> <p>*증빙 제출 불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집약기업(1점) / R&D 매출성과 우수기업 여부(1점) ○ 명문장수 기업 여부(1점) / 일자리안정금지원기업(2점) ○ 지역혁신성장기업(1점) / 사회적경제기업(1점)
4. 가점 (최대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집약기업(1점) / R&D 매출성과 우수기업 여부(1점) ○ 명문장수 기업 여부(1점) / 일자리안정금지원기업(2점) ○ 지역혁신성장기업(1점) / 사회적경제기업(1점)
<p><제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폐업 중인 기업 ○ 유희·향락업, 숙박·음식점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동일제품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붙임2]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개요 및 평가항목

1. 개요 :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을 정부 지원사업에 우대선정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2. 절차 : 기업의 사용자지표 데이터를 일자리평가 시스템에서 확인 및 검증하여 접수 제공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절차>



3.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I. 일자리 양	고용증가	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70	가.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과 나.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을 각각 평가한 후 더 높은 평점을 반영
II. 일자리 질	성과공유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5) 나. 성과급 지급 (+15) 다. 임금수준 상승 (+15) 라. 우리사주제도 운영 (+15) 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15) 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15) 사.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中 1 (+15)	3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III. 고용질서 준수	법령준수	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10)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	-20	
IV. 가점	근로환경	가. 근로시간 단축 (+10) 나. 정주여건 개선 (+5) 다. 가족친화인증 (+5)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자. 현장실습 선도기업 (+5) 차. 중소기업 복지플러스 우수활용기업 (+5) 카. 존경받는기업안이 대표로 있는 기업 (+5) 타.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5)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합 계			-10~100	가점포함 최대접수 100점

※ 성과급 지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운영,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항목은 사업 신청 마감일 이전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접수 부여

[붙임3]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각 평가항목 별 개요 및 문의처

평가항목	내용 및 문의처
미래성과공유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급 등을 통해 경영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겠다고 사전 협약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mes.go.kr/sanhakin
성과급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의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mes.go.kr/sanhakin
임금수준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근로자의 해당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mes.go.kr/sanhakin
우리사주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https://esop.ksfc.co.kr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한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치하고 기금을 운영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mes.go.kr/sanhakin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mes.go.kr/sanhakin
내일채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88-6259, https://www.sbcpplan.or.kr/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청년근로자가 5년 이상 재직하면 적립금+복리이자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88-6259, https://www.sbcpplan.or.kr/
근로시간 단축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근로시간 조기단축을 시행한 기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정주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중기부-국토부(LH)가 공급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부지를 제공한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48)

가족친화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6309-9042), http://www.ffsb.kr
청년친화강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work.go.kr/smallGiants
노사문화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02-6021-1061), https://www.nosa.or.kr
인재육성형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mes.go.kr/sanhakin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http://www.hrdkorea.or.kr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은 기업 ▪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052-703-0598), http://www.kosha.or.kr
현장실습 선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기업 중 고졸채용실적, 안전대책 마련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 ▪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시·도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통해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우수 복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044-204-7448) 대한상공회의소 회원협력팀 (02-6050-3881) 복지플랫폼 콜센터(1588-1600)
존경받는기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혁신"과 "상생"의 기업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 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모범 중소기업인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055-751-9825)